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2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「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)

○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, 사업선수금, 일반회계 전입금, 국비보조금, 지방채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함

나.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
○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,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, 공공시설 건설비용,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,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정함

다. 예비비 (안 제4조)

○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

라. 준용규정 (안 제5조)

○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9조(회계의 구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결과(2012. 6. 11 ~ 6. 30) : 의견제출자 없음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 따라 성주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(이하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
2. 사업선수금
3. 일반회계 전입금
4. 국비보조금
5. 지방채
6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.

1.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
2.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
3.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
4.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
5.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예비비)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